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가단534618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6. 8. 17.

판결 선고2016. 8. 3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3,297,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2.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5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5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9.경 피고 A와 사이에 위 가맹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피고 A의 코리아세븐에 대한 위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	(주)코리아세븐	C	64,000,000	2013. 8. 25. -2018. 8. 24.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	----------	---	------------	----------------------------	-----------------------------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A가 피보험자인 코리아세븐과의 주계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보험금의 지급

코리아세븐은 피고 A가 2013. 12.경부터 지속적으로 매출금 등을 송금하지 않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2015. 1.경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손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28. 코리아세븐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3,29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그런데 피고 A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2. 그의 모친인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2.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63,297,4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2015. 9. 27.까지는 연 6%, 2015. 9. 28.부터 2015. 12. 26.까지는 연 9%, 2015.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코리아세븐과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A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5. 8. 28. 코리아세븐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의 김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잔대금 채무(약 39,000,000원) 및 신용대출채무(원금 10,000,000원)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피고 A의 김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외에 분양 잔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변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B가 주장하는 신용대출 채무에 관하여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인 2015. 1. 2.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1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채무가 피고 A로부터 인수한 채무였다거나 그 신용대출금이 피고 A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고 B는 피고 A의 모친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인수한 채무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므로 피고 B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4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건 부동산에는 2014. 7. 16.

김천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9,48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1. 2.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3,248,085원(= 원금 82,900,000원 + 이자 281,269원¹⁾ + 이자 65,629원²⁾ +

연체이자 1,1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40,000,00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83,248,085원을 공제한 잔액인

56,751,915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위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이 취소할 수 있고, 피고

B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배정현

별지

1) 2014. 12. 15.까지 발생한 이자(2014. 12. 26. 변제됨)

2) 2014. 12. 16.부터 2014. 12.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4.128%로 계산한 이자:

$82,900,000\text{원} \times 7\text{일}/365\text{일} \times 4.128\% = 65,629\text{원}$